

2022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채용시험 추가 합격자 공고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채용시험 추가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2022년 1월 24일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

1. 최종 합격자

분야	추가합격자	응시번호
사무보조(일반)	1명	10번
사무보조(전문) 속기/서무	1명	4번
방호	1명	6번

2. 최종합격자 서류제출

- 제출기한 : 2022. 1. 26.(수), 18:00까지
- 제출처 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
※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중앙동)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
범죄수사처 2층 운영지원담당관실 / ☎ 02-6320-0271
- 공무원 등록서류 재중 표기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
- 제출서류 (모든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나오도록 발급)
 -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[서식1 참조]
 - ② 채용 신체검사서 1부 [서식2 참조]
 - ③ 이력서 1부 [서식3 참조] *서면 및 e-mail 제출 islbilbc@korea.kr

- ④ 최종학력(졸업)증명서 1부
- ⑤ 기본증명서(상세)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
- 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(앞·뒷면) 사본 1부
- ⑦ 사진(반명합판) jpg 파일 *e-mail 제출 islbilbc@korea.kr

3. 기타사항

- 제출일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「공무원임용령」 제11조제2항을 준용하여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,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결격사유 확인, 제출서류 허위·부정기재 사실 확인,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임용포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포기서[서식4]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(02-6320-027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공무원근로자 채용 심사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
1	결격사유 유무 정보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자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 (한 자)	()	사 진 (3cm × 4cm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가슴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) 우: (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 좌: () 우: ()
안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치 아		호 흡 기 질 환	
간 질 환		신 경 질 환	
소 화 기 질 환		피 부 질 환	
순 환 기 질 환		정 신 질 환	
비 뇨 기 질 환		혈청검사(매독)	
흉부 X선 검사		기 타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] 합 격 [] 불 합 격 [] 판 정 보 류	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	
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의 장 (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공수처, 인사혁신처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공무원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[의료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“검사 내용”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“정상”, “양호”, “이상 없음” 등으로 적어야 함
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“합격” 또는 “불합격” 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3. “검사 결과 합격 여부”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“√”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‘만성골수성백혈병’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 - ‘매독(syphilis)’ 양성으로 나타나나,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
 - ‘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’ 에 해당하지 않음
 - 나.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.1, 오른쪽 0.1
 -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(microliter)당 6만개 이하인 ‘혈소판 감소 자색반’ 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
 - ※ 판정 보류 사유: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

이 력 서

인 적 사 항	사진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	휴대폰		E - Mail	
		주 소			

학 력	기간	출 신 학 교	전 공

자 격 면 허	자격증	기간	발급기관

경 력 사 항	기 간	기 관	담당업무

채용 포기서

구 분	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		
응 시 번 호			
성 명		생년월일	-
주 소	(우편번호 :)		
휴 대 전 화		e-mail	

위 본인은 () 사정으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성명 : (서명/인)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

- ※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: 학업, 취업, 사업, 질병, 가사형편 등
- ※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맨 아랫줄은 수신기관 표시